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세종 건설클레임센터 Monthly Insight 8월호

2026.08.26

폭염은 이제 예외적인 기상현상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고 장기화되는 현장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은 옥외작업 비중이 높고, 철근·거푸집·콘크리트·방수·마감·양중·토공처럼 작업장소와 공정을 쉽게 옮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같은 기온이라도 작업강도·복사열·습도·보호구·장비열에 따라 노동자가 실제로 받는 부담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폭염을 '기후 재난'으로 보고,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운영, 폭염 취약사업장 불시감독 및 건설현장 집중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은 폭염으로 인해 체감온도가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를 '폭염작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감온도 33℃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체감온도 단계에 따른 작업중지를 권고하고 있으며, 체감온도 38℃ 이상에서는 적극적으로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온열질환자는 2023년 2,818명, 2024년 3,704명, 2025년 4,46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2026년에도 7월 21일까지 1,070명의 온열질환자와 4명의 추정 사망자가 신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폭염 대응이 단순한 근로 편의나 복지 차원을 넘어 생명·안전과 직결된 현장관리 과제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물과 그늘막을 준비했는가"라는 정도의 대응에 머무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위치에서 체감온도를 측정할 것인지, 어느 공정을 먼저 조정할 것인지, 누가 작업중지를 결정하고 어떤 조건에서 재개할 것인지, 줄어든 작업시간과 추가 교대·야간작업을 공정표와 비용자료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까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이번 뉴스레터는 폭염 관련 법령을 해설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폭염이 일상이 된 현장에서 발주자·감리·CM·시공사·하도급사가 어떤 기준으로 작업을 조정하고, 안전과 공기·품질·비용 영향을 어떻게 함께 관리하며, 나중에 설명 가능한 기록을 어떻게 남길 것인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관련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9조·제560조 ▶질병관리청, 2026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 ▶고용노동부, 20대 건설사 폭염대책 간담회

이번 달 핵심 메시지

1. 폭염 대응은 더 이상 현장 재량이 아니라 작업조건과 공정계획의 일부입니다

폭염은 매일 아침 날씨를 확인하고 물과 얼음을 준비하는 정도로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체감온도와 공정별 작업강도를 기준으로 작업시간, 교대조, 휴식, 인력·장비 투입, 타설·양중 시점을 미리 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폭염작업 시 휴식 기준이 법제화되고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가 강화된 상황에서는, 폭염 대응계획이 안전관리계획과 실행공정표에 실제로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기상정보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작업구역의 실제 체감온도와 열부담”입니다

같은 현장 안에서도 지하 굴착부, 철골 상부, 옥상, 밀폐된 실내, 아스팔트·콘크리트 주변, 장비 내부의 열환경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장 입구나 냉방장치 부근에서 측정한 한 개의 수치만으로 전체 현장을 판단하면 위험구역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측정 위치, 시각, 작업강도, 복사열, 보호구 착용 여부를 함께 기록하여 공종별·구역별로 대응해야 합니다.

3. 폭염으로 줄어든 작업시간은 안전 문제이면서 공기·품질·비용 문제입니다

무더위 시간대 작업중지, 휴식시간 확대, 교대조 편성, 야간작업 전환은 생산성과 공정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무리한 만회작업은 피로 누적과 다른 안전사고를 키울 수 있고, 콘크리트·방수·도장·접착·양생 등 온도에 민감한 공정은 품질관리 기준도 함께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조치와 공정·비용 조정을 분리하지 말고 하나의 이슈로 관리해야 합니다.

주요 실무 이슈

1. 기준의 이해: 법적 의무와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를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 안전보건규칙은 체감온도 31℃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를 “폭염작업”으로 보고, 냉방·통풍장치 설치, 작업시간 조정 또는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합니다. 체감온도 33℃ 이상에서는 원칙적으로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여야 하며, 다만 작업의 성질상 휴식 부여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용 냉방·통풍장치나 보냉장구 등으로 체온 상승을 줄이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단계별 작업중지 기준은 현장의 위험 수준에 따라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권고 기준입니다. 법령상 휴식 부여 의무와 정부의 작업중지 권고를 혼동하지 말고, 현장 내부 기준에서는 법적 최소기준을 넘어서서 보다 구체적으로 작업조정·중지·재개 절차를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체감온도 31℃ 이상: 폭염작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냉방·통풍, 작업시간 조정, 휴식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실시합니다.
- 체감온도 33℃ 이상: 원칙적으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고,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을 검토합니다.
- 체감온도 35℃ 이상: 정부의 단계별 권고에 따라 무더위 시간대인 14시부터 17시까지 옥외작업을 중지하고, 불가피하게 작업을 계속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호조치와 관리절차를 취합니다.
- 체감온도 38℃ 이상 또는 고용노동부의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경우: 정부의 단계별 권고에 따라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은 중지합니다.

2. 체감온도 관리: “어디서, 언제, 어떤 작업을 기준으로 측정했는가”가 중요합니다

폭염 대응의 출발점은 현장 입구에 설치된 온도계의 한 개 수치가 아니라, 실제 작업자가 노출되는 장소에서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감온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형 현장은 구역별 작업조건이 다르므로 현장 전체를 하나의 수치로 관리하기보다, 옥상·철골·굴착부·밀폐구역·장비 내부·햇빛과 복사열이 집중되는 구역 등 위험지점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측정 위치는 휴게실이나 냉방장치 주변이 아니라 실제 작업자의 노출환경을 대표하는 곳으로 정합니다.
- 최고 위험시간대뿐 아니라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공정 또는 기상조건 변경 시 추가 측정합니다.
- 측정값과 함께 작업공종, 작업강도, 보호구 착용, 복사열, 환기 상태, 작업자 수를 기록합니다.
- 외부 기상정보와 현장 측정값이 다르면 현장 측정값을 중심으로 더 보수적으로 대응합니다.
- 하도급사별 자체 측정값이 다르게 관리되지 않도록 원청·감리·협력사가 동일한 기준과 기록양식을 사용합니다.

3. 작업중지와 재개: 누가 판단하고 무엇을 확인할지 사전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폭염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단계별 작업조정이나 작업중지 결정을 현장소장 또는 안전관리자 개인의 임의적 판단에 맡기는 경우입니다. 공정 압박이 큰 현장일수록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조금만 더 하자”는 관성으로 작업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현장 관리 차원의 작업조정·중지 결정권자와 대리자, 보고라인 및 재개 승인절차를 미리 정하되,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른 근로자의 작업중지·대피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작업중지 결정권자와 대리자를 정하고, 하도급사 노동자도 위험징후를 즉시 신고하고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작업중지의 예외가 되는 ‘긴급조치 작업’은 단순히 공정상 시급하다는 이유만으로 정하지 않고, 안전 확보를 위해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나 구조물·시설 보호 작업 등으로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합니다.
- 작업 재개 전에는 체감온도 저하, 휴식·수분 보충, 작업자 상태, 인력 교대, 작업시간 단축, 추가 보냉장구와 감시자 배치를 확인합니다.
- 중지·재개 결정은 구두지시로 끝내지 말고 시각, 구역, 대상 공종, 판단근거, 승인자를 기록합니다.

4. 공정·품질관리: 폭염 대응을 실행공정표와 일일작업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폭염으로 작업시간이 줄어들면 단순히 하루 생산량이 감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행·후속공정, 협력업체 투입, 장비 회전, 자재 납품, 검사·승인 일정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은 폭염기간을 “일정에 없던 변수”로만 보지 말고, 예상 가능한 계절조건으로 보고 작업시간대와 공정순서를 조정해야 합니다.

- 고강도 옥외작업은 이른 시간대로 옮기고, 무더위 시간대에는 실내·저강도·준비작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야간작업 전환 시 조명, 소음·민원, 교통통제, 감시자, 피로 누적, 다음 교대조 휴식시간을 함께 검토합니다.
- 콘크리트 타설·양생, 방수·도장·접착 등 온도 민감 공정은 자재·시방 기준과 품질관리계획을 다시 확인합니다.
- 폭염으로 변경된 실행공정표가 발주자·감리와 공유·승인되지 않은 채 내부 일정으로만 운영되지 않도록 합니다.

5. 비용과 계약관리: 폭염대책 비용과 공기영향은 발생 당시부터 분리해 기록해야 합니다

그늘막, 이동식에어컨, 냉방차량, 보냉장구, 교대인력, 추가 조명, 야간작업, 장비·인력 대기 등은 폭염 대응 과정에서 실제 비용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기연장이나 추가비용 보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조건, 당초 공사기간에 반영된 계절조건, 예외적인 폭염의 정도, 작업중지 지시, 완화조치, 실제 영향 공정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 통상적인 계절 폭염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 안전비용과 예외적 상황으로 추가 발생한 비용을 구분합니다.
- 작업시간 단축·중지 일수만 집계하지 말고, 실제 영향을 받은 공정과 후속공정의 변화를 공정표로 연결합니다.
- 발주자·감리에 폭염 상황과 예상 영향을 적시에 통지하고, 공정조정·야간작업·대체작업에 대한 협의 결과를 문서로 남깁니다.

- 휴식시간 확대, 교대조 추가, 장비 대기, 재배치 비용은 작업일보·출역자료·장비일보·정산자료와 연결합니다.

6. 응급대응: 증상 발견 후의 몇 분이 중요합니다

온열질환은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극심한 피로, 구역감, 의식저하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의식장애와 고열을 동반할 수 있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신속히 체온을 낮추어야 합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음료를 억지로 마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 작업자 간 짝관리 또는 관리감독자의 순회 확인으로 초기 증상을 빠르게 발견합니다.
-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옷을 느슨하게 하며, 물·선풍기·냉각재 등으로 몸을 식힙니다.
- 의식저하, 이상행동, 고열 등 열사병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신속한 냉각조치를 실시합니다.
-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현장은 증상·신고·대피 요령을 이해 가능한 언어와 그림으로 안내합니다.

예상되는 실무상의 고민

- 기상청 체감온도와 현장 측정값이 다를 때 어느 값을 기준으로 대응해야 하는가
- 하나의 대형 현장에서 구역별 체감온도가 다른 경우 작업중지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 체감온도 33℃ 이상에서 휴식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출역·작업기록에 반영할 것인가
- 긴급조치 작업과 단순히 공정상 긴급한 작업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 폭염으로 인한 작업시간 단축·중지와 실제 공정지연 사이의 관계를 어떤 자료로 설명할 것인가
- 발주자·감리가 야간작업 또는 공정조정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어떤 통지와 기록을 남겨야 하는가
- 추가 쉼터·냉방장치·교대인력·야간작업 비용의 부담 주체를 계약에 어떻게 정할 것인가
- 하도급사와 외국인 노동자까지 동일한 폭염 기준과 작업중지 절차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이번 달 실무 포인트

1. 현장 전체가 아니라 구역·공종별 폭염 위험지도를 만들 것

옥상, 철골, 굴착부, 밀폐구역, 장비 내부, 복사열 집중구간 등 열부담이 큰 지점을 표시하고 대표 측정점을 정합니다. 작업공종과 시간대가 바뀌면 위험지도와 측정지점도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2. 체감온도 단계별 조치와 작업중지 권한을 사전에 문서화할 것

법적 휴식 기준과 회사 내부의 작업조정·중지 기준을 구분하고, 누가 언제 판단·보고·승인하는지 정합니다. 긴급조치 작업의 범위와 작업 재개 조건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3. 폭염 대응계획을 실행공정표·일일작업계획과 연결할 것

휴식 확대, 무더위 시간대 중지, 야간작업 전환, 교대조 편성은 실제 공정과 인력·장비 운영을 바꿉니다. 변경된 작업계획을 공정표, 작업일보, 협력업체 투입계획에 동일하게 반영합니다.

4. 안전조치와 공기·비용 영향을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관리할 것

체감온도, 작업중지, 휴식, 대체작업, 인력·장비 대기, 야간 전환, 발주자 협의, 공정영향을 시간순으로 연결합니다. 단순히 “폭염으로 작업하지 못했다”는 결과보다, 어떤 조치와 완화노력을 했는지가 보여야 합니다.

5. 온열질환 의심자 발생 시 응급조치와 당시 현장조건 기록을 병행할 것

응급조치와 119 신고를 최우선으로 하되, 이후 발생 위치·시간·작업내용·체감온도·휴식 및 수분공급 상태·보호구·당시 조치내용을 신속히 정리합니다. 이는 책임 회피를 위한 자료가 아니라 동일한 조건에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정보입니다.

이번 달 참고자료

1. 폭염 대응체계 사전점검표

체감온도 측정, 5대 기본수칙, 취약작업·취약노동자 파악, 협력업체 공유, 응급대응 및 기록체계를 현장 착수 전 점검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바로가기 >

2. 체감온도 단계별 작업조정·중지·재개 체크리스트

법적 의무와 정부 권고를 구분하면서, 현장 내부에서 단계별로 어떤 조치를 하고 누가 중지·재개를 승인할지 정리한 자료입니다.

바로가기 >

3. 폭염으로 인한 공정·비용 영향 및 기록 패키지

폭염 이슈를 체감온도-작업조치-영향공정-완화조치-비용-협의 결과의 흐름으로 남기기 위한 기록 기준과 1페이지 이슈 브리프 예시입니다.

바로가기 >

마무리

이번 뉴스레터의 핵심은 폭염 대응을 일시적인 계절행사나 현장 편의조치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폭염은 작업자의 건강뿐 아니라 작업중지, 생산성, 공정순서, 품질, 추가비용과 발주자 협의까지 동시에 흔드는 상시적인 프로젝트 리스크가 되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서류가 아니라, 실제 작업구역의 체감온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작업을 조정·중지하며, 안전조치와 공정·비용 영향을 같은 흐름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와 별첨이 각 현장에서 폭염 대응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련구성원

김용호
변호사

02-316-4202
yhokim@shinkim.com

이승수
변호사

02-316-4341
sslee@shinkim.com

최혁준
변호사

02-316-4507
hjchoi@shinkim.com

안헌준
변호사

02-316-1640
hjoahn@shinkim.com

여진아
변호사

02-316-1781
jahyeo@shinkim.com

이동희
수석전문위원

02-316-1763
dheelee@shinkim.com

고윤섭
전문위원

02-316-1862
ysko@shinkim.com

박길범
연구위원

02-316-1737
gbepark@shinkim.com

Copyright SHIN & KIM LLC. All rights reserved.